

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개정(안) 관련 신·구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조(목적)</p> <p>이 규정은 교육부 「대학혁신지원사업(이하 “혁신지원사업”이라 한다.)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에 설치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및 산하 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, 혁신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</p> <p>이 규정은 교육부 「대학혁신지원사업(이하 “혁신지원사업”).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)에 설치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제위원회 및 사업전담 조직의 운영과 혁신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사업전담 조직 신설에 따른 관련 근거 마련</p>
<p>제3조(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.</p> <p>1.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</p> <p>2. 대학의 비전과 혁신지원사업 목표의 정합성 추진</p> <p>3. 혁신지원사업 정책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</p> <p>4. 사업비 집행 기준 수립 및 부적정 집행 대응</p> <p>5. 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</p> <p>6. 대학재정지원사업 간 동일, 유사 및 상충되는 계획 심의, 조정</p> <p>7. 그 밖에 혁신지원사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</p>	<p>제3조(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)</p> <p>①~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.</p> <p>1. 대학의 비전과 혁신지원사업 목표의 정합성 추진</p> <p>2. 혁신지원사업 정책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</p> <p>3. 사업비 집행 기준 수립 및 부적정 집행 대응</p> <p>4. 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</p> <p>5. 그 밖에 혁신지원사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</p> <p>6~7. (삭제)</p>	<p>운영위원회 기능 일부를 대학발전위원회 및 (가칭) 국고관리위원회로 이관 예정</p>
<p>4조(사업추진위원회)</p> <p>① 혁신지원사업의 운영실무를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,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 및 자문기능을</p>	<p>제4조(대학혁신지원사업팀)</p> <p>① 혁신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기획처 내에 대학혁신지원사업팀 (이하 “사업팀”)을 둔다.</p> <p>② 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.</p> <p>1. 사업의 총괄적인 수행·관리·지원</p> <p>2.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별 예산 책정</p> <p>3. 사업집행 및 성과지표 모니터링</p>	<p>대학혁신지원사업팀 신설 따른 관련 근거 마련</p>

수행한다.

1.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실무 및 보완
2. 정책방향에 따른 중점추진과제 설정 및 실행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혁신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타 기획 사항

4.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
 5.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와 확산
 6.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제도의 정비
 7.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, 연차·중간·종합보고서 작성
 8. 기타 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
- ③~④ 삭제

제5조(사업추진팀) 혁신지원사업의 총괄 담당 부서는 기획처 미래전략팀으로 하며, 사업추진(수행)은 각 실행부서 책임하에 추진한다.

제5조(대학혁신지원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)

- ① 사업팀 운영자문을 위해 '대학혁신지원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"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")를 둔다.
- ② 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학내 구 성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.

사업팀 신설에 따라 기존 사업추진위원회를 대학혁신지원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로 변경함

1.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정책방향에 따른 중점과제 설정 및 실행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혁신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타 주요 사항

제7조(예산의 전용 및 집행)

- ①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「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」에 따라 운영하며,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.
- ② 예산의 전용은 총괄 담당 부서의 검토 후 예산총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.
- ③ 「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」에서 정의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예산 및 회계관리 기준을 준용한다.

제7조(사업비 변경)

- ① 모든 사업비는 혁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며, 집행 방법 및 사업비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은 「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」에 따른다.
- ② 「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」에서 정의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예산 및 회계관리 기준,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대학 자체 기준을 준용한다.
- ③ (삭제)

사업팀의 예산 전용 심의 기능 추가 및 사업에 대한 내부 지침 근거 마련

제9조(모니터링)

- ① 혁신지원사업의 총괄 담당 부서는 사업추진(수행)부서가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.
- ②~③ (생략)

제9조(모니터링)

- ① 사업팀은 사업추진(수행)부서가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.
- ②~③ (현행과 동일)

사업팀 신설에 따른 변경

제10조(자체평가위원회)

- ① (생략)
-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본 대학의 교원으로 구성되며,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사업추진과정 모니터링
 - 3. 사업별 자율성과지표 목표값 달성도 점검
 - 4. 세부 사업별 달성도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자문
 - 5. 사업성과지표 점검 및 설정
 - 6. 평가결과에 기반한 환류체계 구축
 - 7. 사업의 효과성, 사업 성과 창출 요소 발굴 및 확산
 - 8. 기타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와 관련된 중요 사항

제10조(자체평가)

- ① (현행과 동일)
-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학내 전임교원으로 임명한다. 단, 자체평가의 투명성·민주성 확보를 위해 학교경영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, 직원 및 재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
 - 1. (현행과 동일)
 - 2. 사업별 자율성과지표 목표값 달성도 점검
 - 3. 세부 사업별 달성도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자문
 - 4. 사업성과지표 점검 및 설정
 - 5. 평가결과에 기반한 환류체계 구축
 - 6. 사업의 효과성, 사업 성과 창출 요소 발굴 및 확산
 - 7. 기타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와 관련된 중요 사항
 - 8. (삭제)

사업팀 신설에 따른 일부 기능 삭제 및 교육부 훈령 제정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요건 변경